

南北經濟交流協力에 따른 商事仲裁制度的 問題點

梁 炳 晦*

- I. 머리말
- II. 南北韓 經濟交流現況과 問題點
- III. 經濟交流協力を 위한 北韓法制
- IV. 紛爭解決方案-統一獨逸의 경우
 - 1. 독일에서의 仲裁制度(Schiedsgerichtsbarkeit)
 - 2. 仲裁法과 當事者の 合意
- V. 南北韓의 商事仲裁制度
 - 1. 北韓의 仲裁制度 現況
 - 2. 北韓의 機構와 仲裁節次
 - 3. 北韓의 仲裁法制
 - 4. 北韓에서의 仲裁審理節次(事件處理規程/審議規則)
- VI. 맺음말

I. 머리말

최근 北美間의 제네바회담 타결로 北韓의 핵확산금지조약(NTP) 탈퇴이후 중단되어온 南北韓 經濟協력이 政府의 핵과 經協問題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선언을 계기로 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北進出 行步가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北美의 핵협상타결 이후 우리 政府가 먼저 핵문제와 經濟協力關係의 連繫를 철회하므로써 南北經協의 실질적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타당한 조치라 본다.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핵을 포함한 핵투명성에 대한

* 建國大學校 法學科 教授

보장과 함께 北韓이 마지막까지 拒否意思를 굽히지 않았던 南北對話再改를 合意文에 명시키로 한 것은 이번 北美會談의 역사적인 의의를 높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南北間의 經濟交流는 北韓의 NPT탈퇴를 계기로 정치적 문제와 連繫되면서 交易規模가 2억 달러 전후에서 정체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美國은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에 對北韓 經濟規制措置를 완화한 후 지난 주말에는 GM 電話會社인 MCI 등 우수한 기업대표단 18명이 상거래협상을 위해 평양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外國資本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舊 蘇聯 및 東歐 共產主義 國家들의 결속을 보였던 東歐圈이 붕괴한 후, 北韓은 최근까지도 서구 유럽각국을 순회하며 投資說明會를 열기도 했다. 작년말 현재 北韓과 合作投資契約을 체결한 外國企業은 대부분이 일본의 朝總聯系 企業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外資導入은 體制維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外資導入政策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를 감안하여 北韓은 나진·선봉지역에 自由貿易地帶를 만들어 이를 개방한 것이다.

한편 北韓은 최근 몇 년간 서방의 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外國人 投資法, 合營法과 같은 투자와 관련한 法令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北韓經濟의 活路가 開放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對外經濟部分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北韓은 현재 남북대화보다는 오히려 서방국가들이나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國交正常化를 우선순위로 두고 推進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韓半島 力學關係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이제는 南北經協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¹⁾

北韓에 대한 投資與件의 열악함은 경제법령 등 制度的 未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社會間接資本 및 에너지의 절대부족, 외채문제로 인한 對外信用度의 실추, 北韓市場의 빈약한 購買力 등이 모두 기업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要素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政府의 南北經協再改를 위한 法的·制度的 후속조치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北韓에서의 투자에 대한 安全性을 보장받기 위한 投資保障協定의 체결문제, 投資 등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紛爭解決節次 등에 대하여도 확실한 제도가 마련

1) 이상만, 통일경제론, 1994, 304면; 동아일보 1994년 10월 23일; 조선일보 1994년 11월 9일 등 참조

되고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南北經濟共同委員會의 再開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권력승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北韓이 南韓과의 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일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經濟共同委의 再開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南北韓의 變數로 대두되고 있는 美國, 일본, 유럽국가들의 對北韓 진출과 관련, 우리 기업이 對北投資의 先占權을 확보하는 方案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北美會談 合意문에는 美國이 對北韓 무역장벽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된 만큼 美國이나 유럽국가들이 우리보다 먼저 北韓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또 북일국교 정상화에 따른 일본기업의 움직임에도 면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舊東西獨사이의 經濟交流가 궁극적인 統一을 목표로 經濟的 隔差의 緩和와 民族同質性的의 회복을 위해 이루어 졌던 것처럼, 우리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經濟的 수지타산을 따지기 보다는 단계적인 北韓開放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리의 많은 현실적 과제속에서 南北經協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 점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다양한 紛爭에 대하여 어느 法律이 적용되며 어떻게 紛爭을 해결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 기업이 北韓進出에 앞서 北韓의 裁判制度, 法院組織에 관한 연구도 중요하겠으나, 이보다 우선 합리적인 紛爭의 해결수단으로써 널리 인정되고 있는 商事仲裁制度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北韓의 法制를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나 아래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여건속에서 統一을 이룩한 獨逸의 경우를 살펴보고, 극히 제한된 文獻을 통해서 南北韓의 仲裁制度를 검토하기로 한다.

II. 南北韓 經濟交流現況과 問題點

1. 우리와 같이 분단국이었던 獨逸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의 交流와 接觸이 단절되다시피 했던 敵對關係時機부터 1990년 10월 다시 統一이 되기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해온 분야가 兩獨間의 交易(Ost-West-Handel)이다.

獨逸의 內獨去來의 問題點은 西獨의 二重的인 시각이었다. 統一을 위해서는 東獨과의 연결고리로서 內獨去來를 확대실시가 필요하나, 반면에 東獨의 共產政權은 體制維持를 위한 도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을 돕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비판으로 1972년에 兩獨間에 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相互不信속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인 西獨의 정책은 무엇보다 統一을 위한 외부의 환경을 조성하고 兩獨關係를 정상화시키며 마지막으로 獨逸民族으로 하여금 體制비교를 통하여 統一獨逸의 體制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이 었다.²⁾ 西獨의 對東獨政策의 轉向은 東西獨간의 관계개선은 물론 經濟的, 인적교류와 협력면에서 급성장하였고 이는 후일 東獨住民들로 하여금 獨逸民族의 동일성을 회복시키고 獨逸統一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東獨은 1990년 3월 18일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되었고 西獨 헌법 제23조에 의한 西獨으로의 編入(Beitritt: 이를 흡수統合이라 한다.)에 의해 1990년 10월 3일 平和的인 統一獨逸을 이루었다.

獨逸統一의 주된 동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유와 經濟的으로 풍요로운 서방세계에 대한 憧憬도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내부적인 교류를 통하여 구축되어온 獨逸國民間의 相互信賴가 통제적인 東獨政權을 몰락시키게 된 것으로 본다.

2. 南北韓 간의 經濟交流는 해방직후부터 물자교류와 함께 제한적인 人的交流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도 1949년 4월 공포된 南北政治交易에 관한 件과 함께 일체의 교류가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民族統一을 위한 南北對話의 재개와 주변 4강국과의 경제교차교류가 기대되는 가운데 1978년말에 영국의 힐 사무엘상사를 통해 仲介貿易形式으로 北韓産 석탄 1만톤을 수입, 진남포에서 부산으로 수송하여 南北韓交易이 재개되었다.

1988년 7.7. 대통령특별선언과 政府의 10.7 對北經濟交流 허용방침에 따라 南北韓間的 經濟交流는 활발하게 시작되었다.³⁾ 여기에는 統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였고 이와 함께 기업들의 北韓의 저렴한 노동력의 활용과 原資材의 供給

2) 黃炳惠 外, 독일, 베트남 예멘의 統一이 南北韓 統一에 주는 시사점, 北韓研究(통권17호) 1994/가을호, 46면 이하; Weidenfeld/Korte(Hrsg.),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M., 1992, S. 216ff (225) 참조

3) 朴魯馨, 前掲書, 111面; 統一院, 月刊 南北交流協力動向 제19호 91993, 1.1 - 1.31 참조

을 확보라는 經濟的 欲求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러나 北韓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제로 南北韓間의 交易實績은 부진하였다.

1908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인 탈냉전의 화해분위기에 힘입어 1990년 10월 獨逸은 마침내 平和的인 방식에 의한 東獨의 西獨에의 吸收統一로 統一을 달성하였다. 獨逸의 統一은 우리 韓半島에도 統一의 희망을 가져다 주었으며 南北間의 經濟交流와 협력이 급속히 확대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1991년 9월에는 南北韓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고 南北關係를 화해·협력의 단계로 만든 법적토대가 된 基本合意書(南北사이의 화해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가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채택·서명되었고 1992년 2월 20일 交換되므로써 발효되었다.⁴⁾

이 合意서의 내용을 보면 東西獨간 1951년 체결된 「內獨貿易協定」부터 1987년에 이루어진 「環境保護協力」, 「文化交流協力」 및 「原電問題 解決에 관한 協定」의 내용의 포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東西獨關係에서의 經驗이 이 협정을 통하여 統一의 길을 열어 준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基本合意書의 채택은 南北間에 상당규모의 교역의 증가로 南北經濟 교류가 본격화되는 듯 보였다. 1992년 2월에는 基本合意書가 발효되었고 5월에는 南北經濟共同委員會가 구성되어 南北交流가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 들게 되었다. 그러나 北韓의 핵문제에 의해 제8차 南北高位給會談 이후 南北對話는 전면 중단되는 급냉기를 갖게 되었다.

1993년 2월 文民政府의 출범후 南北韓의 經濟交流개개를 위한 우리 政府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3년 2월 北韓의 核擴散禁止條約(NTP)의 탈퇴선언으로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南北韓의 經濟交流는 당분간 급진전될 것 같지 않으나 南北韓의 어려운 현실여건 등을 감안할 때 政府가 보다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우선 文民政府간 차원의 經濟交流 協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 허락하여야 할 것이다. 南北韓間의 言語 및 文化의 同質性은 南北交易에서 제3국 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北·美核問題會談도 타결된 현시점에서 北韓의 자세변화에 따라 南北經濟交流도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南北交易이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4) 李英峻, 南北韓交易의 問題點과 方向, 國際法學會論叢(통권 제73호), 1993, 41面이하; 諸成鎬, 基本合意書의 性格과 效力, 國際法學會論叢(통권 제71호), 1992, 145面; 柳炳華, 南北韓基本合意書의 法的性格, 法學論叢 第27輯(고려대 법과대학 1992), 72-74面 參照

지 못하고 저조한 이유로는 北韓商品 등에 대한 情報不足도 문제이겠으나, 이 보다는 北韓측의 일방적인 契約破棄 등 間接交易에 따르는 問題點과 함께 南北韓間에 貿易協定, 投資保護協定, 그리고 투자 및 거래관계 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紛爭解決에 관한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企業體의 불신감이 높으며 紛爭發生時 신속하고 공정한 解決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韓半島에 있어서의 貿易仲裁은 南北貿易協定을 平和的으로 해결하는 측면과 平和的 統一로 가는 한 과정이라는 두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Ⅲ. 經濟交流協力を 위한 北韓法制

1. 北韓은 지난 1984년 9월 8일에 中國의 1979년(1990년 개정)에 제정된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토대로 한 「合營法」을 제정하여(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제10호) 外國의 기술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⁵⁾ 이 법은 對外經濟協力を 통하여 對內經濟發展과 人民生活向上을 위하여 西方으로부터의 合作投資에 의한 직접적인 資本과 技術導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北韓은 적극적으로 外國企業의 투자유치에 주력해 왔으나 合作實績이 총 140여 건에 총투자규모 1억 5000만 달러에 불과하였고, 그중 약 60%가량이 朝總聯 商工人과의 합작인 것으로 나타나, 당초 기대했던 西方의 資本과 先進技術導入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⁶⁾

특히 東歐 共產圈 국가들의 社會主義體制 拋棄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그들 국가와의 求償貿易方式이 現金決濟方式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北韓의 合營法은 외자유치를 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北韓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外國企業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經濟協力에 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인식속에 1992년 10월에 「外國人投資法」⁷⁾, 「外國

5) 法制處, 北韓法制概要(法制資料 第157輯), 1991, 608面, 同 北韓의 合營法制, 韓國法制研究院, 1992, 14面이하 참조

6) 統一院, 北韓概要, 1992, 229面

7) 李啓滿, 최근의 북한 外國人投資關聯法, 北韓研究(통권17호), 大陸研究所, 1994/9.18면; 매일경제신문, 1992. 10.20 ; 중앙일보, 1992. 10.20참조

人合營法」 및 「合營法施行規則」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고, 1993년에 「外國人稅金法」, 「外換管理法」 및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을 제정하였다.

北韓의 外國人投資法(전문 22조)에는 그들이 추진중인 自由經濟貿易地帶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北韓은 첨단기술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분야 및 자원개발과 기술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분야에 투자한 外國企業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 보장, 銀行貸付의 우선권 제공과 같은 優待政策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外國人投資法은 合營法の 特別法 성격을 갖는 것으로北韓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經濟特區(自由經濟貿易地帶)에 진출하는 기업에 적용될 法制라 할 수 있다.

1994년 1월 20일에는 最高人民會議 결정으로 合營法을 전면 개정한 「改正合營法」을 만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⁸⁾ 「改正合營法」은 舊法이 外國人投資家の 범위를 외국회사 및 개인(제1조) 그리고 在日朝鮮 商工人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朝鮮同胞(제5조)로 한정하였던 것을 外國人投資法(제5조), 合營法(제5조), 外國人企業法(제6조)과 「改正合營法」 제2조에서는 “共和國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朝鮮同胞들”도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투자와 관련하여 合營法을 대폭 손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外國人 투자에 관련한 紛爭事件은 朝鮮의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合意에 따라 다른나라의 仲裁機關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外國人投資法 제22조) 또한 合營企業의 解散은 존속기간의 滿了, 支拂喪失, 當事者의 契約義務 不履行 등의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改正合營法 제43조) 할 수 있으나, 會社運營主의 不平 및 紛爭은 원칙적으로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선택에 따라北韓의 仲裁機關, 裁判機關 또는 外國의 仲裁機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改正合營法 제47조, 自由經濟貿易地帶법 제42-43조, 外國人企業法 제331조).

그러나 外國人企業法(제31조)과 合營法(제21조)에서의 紛爭事件에 대하여는 合營法과는 달리 事件을 外國(제3국)의 仲裁機關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는 대부분 外國人企業의 경우 外國人 단독출자형태이므로 紛爭이 발생하더

8) 大韓貿易振興公社, 北韓投資實務(무공자료 93-35), 1993. 32-33면

라도 外國人 投資者와 北韓내 거래기업 내지는 北韓當局과의 紛爭이기 때문에 外國(제3국)에서의 仲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⁹⁾

합營當事者간의 紛爭에 관한 合營法상의 北韓 民事訴訟制度는 우리나라의 民事訴訟節次와는 달리 검사 등의 國家機關의 관여가 가능하고, 仲裁制度의 경우는 관련法規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¹⁰⁾ 제3국의 仲裁機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北韓과 과거부터 仲裁關係도 있던 전통있는 獨逸의 베를린 仲裁裁判所(Schiedsgericht Berlin)와 같은 곳을 合營契約上에 명시해 두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¹¹⁾

IV. 紛爭解決 - 統一獨逸의 경우

1. 獨逸에서의 仲裁制度(Schiedsgerichtsbarkeit)

仲裁는 當事者간의 법률관계의 紛爭을 當事者의 자발적인 合意에 의해 제3자인 仲裁人의 유권적 판단에 좇아 紛爭을 해결하는 방법인 점에서 調停(Conciliation)과 다르다. 國際去來關係에서 발생하는 紛爭은 어느 국가의 法院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을 위한 強制執行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¹²⁾ 뿐만 아니라 訴訟節次에 따라 貿易紛爭을 처리하는 경우 關係法制 및 商慣習의 차이등에서 오는 訴訟遲延과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 이외에도 소송비용이 많이 들게되어 國際貿易去來의 紛爭解決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訴訟보다는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우의적인 紛爭解決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仲裁을 선호하는 것이라 하겠다.

獨逸의 仲裁制度는 동·西獨의 統一로 政治, 經濟의 理念과 體制의 차이에서 법적統

9) 大韓貿易振興公社, 前掲書, 51面

10) 韓國法制研究院, 北韓의 外國人 投資法制(북한법제분석 94-1), 1994, 72面; 法制處, 前掲北韓法制概要, 380面 이하 620面 참조

11) Vgl. Strohbach, Handbuch der internationalen Handelsschiedsgerichtsbarkeit Staatsverlag 1990, s. 64f

12) Vgl. Strumpf Ost-West-Schiedsgerichtbarkeit, RIW/AWD 1987, S. 821 f.

一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東西獨이 統一을 하기까지는 獨逸聯邦共和國(西獨)과 獨逸民主共和國(東獨)은 서로 다른 體制속에서 仲裁制度는 발전해 왔다.¹³⁾

東獨은 舊 蘇聯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社會主義 국가들처럼 對外貿易會議所(Außenhandelskammer)¹⁴⁾에 常設仲裁機構를 부설하여 운영하였다. 仲裁節次에는 獨逸民事訴訟法(ZPO) 제125조에서 제1048조가 적용된다. 이 법은 獨逸全域에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統一條約(Einigungsvertrag) 부칙 1의 임시조치규정중에서 仲裁에 관한 몇가지 주의하여야 할 중요한 규정들이 있다. 그것은 統一條約의 효력이 발생할 시점¹⁵⁾에 仲裁節次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舊東獨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東獨은 1954년에 다른 社會主義 국가들과 같이 對外貿易會議所에 仲裁裁判所(Schiedsgericht)를 설치하여 1898년 6월까지 모두 8943건의 仲裁를 처리하였는데¹⁶⁾ 그 중 609건의 當事者는 西獨의 기업이었다. 統一이 되었던 1990년에도 238건의 새로운 仲裁申請이 있었던 것은 그동안 다른 社會主義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공정성이 인정된 仲裁機關이 아니었나 판단된다. 仲裁節次에 적용되는 법은 獨逸民事訴訟法이 아닌 1975년 12월 제정되었던 仲裁裁判規程(Schiedsgerichtliche Verfahrensordnung)이 적용되었다. 베를린 仲裁裁判所(Schiedsgericht Berlin)는 앞으로, 특히 東歐圈內的 중요한 常設仲裁機關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東西仲裁 center로써 발전되리라 전망된다.¹⁷⁾

東獨은 비록 經濟的으로는 內獨去來가 이루어 졌다 하여도 소송법상 外國(Prozessuales Ausland)으로¹⁸⁾, 東獨의 仲裁判定은 東獨의 仲裁節次에 의한 것이므로 獨逸民事訴訟法(제1044호)에 의하면 外國仲裁判定인 것이다.¹⁹⁾ 統一이 되었다고 하여

13) Raeschke-Kessler, Normalisierung der Schiedsgerichtsbarkeit im Ost-West-Verhältnis, BB. Tell 40, 1990, S.15. ff. :Schutze, DWIR 1991. S.48.

14) 이와 類似한 機構로 北韓에는 「國際貿易促進委員會」가 있다.

15) Vgl. Willma, aaO.S.55.

16) Vgl. Strohbach, Wesen und Besonderheiten der Schiedsgerichtsbarkeit in den Mitgliedsländern des RGW, in :Sozialistische ökonomische Integration, Berlin 1974. S. 181 ff.

17) Vgl. Strohbach, ZAP-DDR 1991. 458

18) Glossner u.a., Das Schiedsgericht in der Praxis, 1990. S.168 : Schutze, JZ 1982. S. 637; BGHZ 21. 365; 96.41 + 1985. 970

구 東獨법에 의한 仲裁判定 자체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독이전의 仲裁判定에 대하여는 뉴욕협약에 따라 인정하고 執行되어 진다.²⁰⁾ 舊 東西獨은 다 같이 仲裁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 등 여러 가지 國際條約(Multilateral International Conventions)에 가입하였으며, 특히 仲裁判定의 認定과 執行에 관한 많은 협정들을 체결하고 있었다.²¹⁾

東獨은 특히 東歐共產圈 社會主義國家들의 經濟協力機構인 COMECON회원국간의 (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²²⁾ 國際去來상 중요한 法源이면서 仲裁의 準據法則이 되는 物品引渡一般約款(General Conditions of Delivery of Goods/ ALB-RGW)을 채택하였고²³⁾ 1972년 5월에는 相互經濟協力委員會(COMECON)회원국 상호간의 經濟科學技術協力으로부터 발생하는 民事仲裁에 관한 협약(이른바 모스크바 협약)에 가입(1973.8.13)하였고 이에 따라 마련된 會員國商業會議所 附設 仲裁裁判所의 統一仲裁規則에 가입하였다. 東獨은 北韓(1061), 이집트(1969), 폴란드(1967), 中國(1960) 등과 다양한 형태의 仲裁判定과 執行에 관한 國家간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仲裁法과 當事者の 合意

獨逸仲裁法은 當事者 自治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여 상당한 범위내에서 當事者가 仲裁에 관하여 인정할 수 있는 權限을 허용하고 있고 仲裁節次의 진행에도 當事者간의 合意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이와 같은 合意가 없는 경우에는 仲裁人의 판단에

19) Vgl. Schutze u.a. aaO. Rn. 617; Schwab/Walter, aaO. S.250; Wieczorek/Schutze, ZPO. 2. § 1044Anm. BIII.1 : Hoffmann/Fincke.IZPR. 1980. S. 214 ff.

20) 최근 독일에서의 중재법 개정 논의는 뉴욕협약에 따른 유보선언의 철회와 함께 집행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민사소송법개정에 관한 법무성 보고이다.

이에 관하여는 Bericht mit einem Diskussionsentwurf zur Neuf. d.10. Buches der ZPO. Hrsg. v. Bm. d. Justiz 1994; Schlosser, Bald neues Recht der Schiedsgerichtsbarkeit in Deutschland?. RIW 1994, H. 9. S.726 참조

21) Schutze, DWiR 1991 1. 47; Schwab/Walter. aaO. S. 342 ff : Glossner. aaO. 31f

22) COMECON은 1991년 6월 28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린제46차 회의에서 해체되었다.

이에 관하여 法務部, 蘇聯法研究(4) 1991, 341면 이하 참조

23) Kemper, Außenhandelsverträge. WR. 6/1991. S. 181 f.

맡기고 있음이 특이할 점이다. (ZPO 제1034조 제2항) 國際仲裁를 위하여는 國內仲裁와 마찬가지로 當事者간에 유효한 仲裁合意(Schiedsvereinbarung)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仲裁의 合意라 함은 當事者 쌍방이 그들 사이에 司法上 발생한 紛爭을 仲裁에 붙여 紛爭事項의 최종처리를 맡기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그러므로 仲裁에서의 준거법의 결정은 먼저 當事者의 의사에 따르고(Parteiwille) 또한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當事者의 契約意思를 추론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개의 사안에 있어서 仲裁契約의 성질에 적합한 含目的的인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國際仲裁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편익이 있다.

이러한 仲裁合意 일정한 법률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紛爭의 대상인 사항이 仲裁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고 書面에 의한 合意(in writing. § 1027.1 ZPO)여야 한다. 仲裁合意의 유효성 여부는 우선 仲裁지법(lex fori)에 의해 판단되어지므로 獨逸 民事訴訟法 제1027도 a에 의해 판단되어진다. 일단 仲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當事者는 그에 구속되어 임의로 철회할 수 없게 된다. 유효한 仲裁合意^a 전제로 仲裁지, 仲裁人의 先任, 仲裁機關, 仲裁節次의 규정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仲裁節次가 개시되고 仲裁화해(Schiedsvergleich) 또는 仲裁判定으로 紛爭을 최종적으로 解決하게 된다.

3. 獨逸에는 仲裁人(Schiedsrichter)이 될 자격에 관한 법은 없다. 仲裁人의 선임(Schiedsrichterwahl)은 원칙적으로 當事者의 仲裁合意에 따라 선임되겠지만 仲裁계약에서 仲裁人의 수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각 當事者는 1인의 仲裁人을 선정한 후 그 仲裁人들이 議長仲裁人(Vorsitzender/Obmann)을 선정한다. 仲裁人간의 議長仲裁人에 대한 合意가 사무국의 요청을 받고도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신청으로 仲裁委員會(DAS)의 仲裁裁判所소장(BSG)이 임명한다. 仲裁人 선정과 관련하여 仲裁人名簿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仲裁人 選任을 위한 보조적인 목적에만 이용된다.

獨逸의 仲裁規則은 유럽의 각국의 仲裁規程과 마찬가지로 UNCITRAL 仲裁規則을 그대로 받아드리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⁴⁾ 1989년 개정된 쥘리히(Zurich) 商業會議所의 國際仲裁規則 제10조에 의하면 議長仲裁人이 될 자격이 있

는자를 미리 商業會議所會長에 의해 임명해 두고(현재 8명) 仲裁判定部가 구성되면 그 중에서 議長 또는 單獨仲裁人(Einzelschiedsrichter)으로 선임된다.²⁴⁾ 仲裁人을 內國人으로 선임하던 東歐의 나라들도(예컨대 불가리아, 유고, 폴란드) 仲裁人으로서 內外國人을 다같이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國際商事仲裁의 專門化와 國際化의 추세에 맞는 仲裁制度의 새로운 경향이라 하겠다.

當事者は 仲裁의 合意를 할 경우 장소(仲裁機關) 뿐만 아니라 仲裁에 적용할 규칙을 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仲裁規則에는 이를 當事者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DAS/BSG 제21조). 이처럼 當事者가 仲裁合意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법과 절차에 의해 仲裁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하는 것은 후일일 仲裁判定에 대한 承認 및 執行에 관한 문제와도 함께 고려해 두지 않으면 아니될 중요한 사항이다.

대부분의 仲裁當事者는 仲裁에 적용할 절차규칙을 合意에 의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仲裁合意에서 어느 仲裁機關에서 仲裁할 것을 정하면 곧바로 그 기관이 정하고 있는 仲裁規則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獨逸에서의 仲裁節次는 當事者가 만약 다른 仲裁機關의 仲裁規則을 적용하기로 合意하였다면 그에 의해 절차가 지켜진다.

當事者간에 절차에 관하여 合意가 없는 경우 仲裁人의 재량으로 절차를 정할 수도 있다. 일단 仲裁機關을 정하고 仲裁規則에 合意하면 仲裁의 모든 當事者는 이에 구속된다. 또한 當事者는 仲裁人이 法 또는 衡平(Billigkeit)의 原則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BSG/DAS 仲裁規則 제21조 3항)

4. 仲裁節次는 審問이 종결되고 仲裁人에 의해 判定이 내려졌을때 끝난다. 仲裁判定(Schiedspruch/Award)은 仲裁合意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仲裁人의 多數決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며, 仲裁判定은 書面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ZPO 제1038조). 仲裁判定은 최종적이며 當事者간에 있어서는 法院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ZPO 제1040조/DAS.BSG 仲裁規則 제25조). 仲裁判定문에는 判定의 이유를 기재하고²⁶⁾ 判定일자외 기재와 함께 仲裁人 全員の 署名을 요한다.

24) Vgl.Schutze. DWiR 1991 S.48

25) Schutze/Wais. aaO. S. 443(633)

문제는 多數決에 의해 결정은 되었으나 仲裁人 중 한사람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效力이 발생할 수 없게 되므로 民訴法 제1039조를 개정하여²⁷⁾ 결정에는 참가하였으나 署名을 거부한 경우에 議長仲裁人이 이 사실을 判定文에 기재하고 나머지 두명의 署名으로도 효력을 갖게 하였다.(DAS /BSG 仲裁規則 제23조 제2항/Zurich 仲裁규정 제47조는 議長仲裁人 서명만으로도 유효). 判定文은 當事者에게 送達되어야 하며 管轄法院에 제출·보관한다.²⁸⁾ 仲裁判定에 대한 上訴 또는 再審에 의한 구제방법은 없다. 仲裁判定의 내용에 대한 진실여부 등을 들어 취소할 수는 없으나 민소법 제1041조에 규정된 取消事由가 있으면 仲裁에서 패한 當事者가 管轄法院에 仲裁判定取消의 訴(Aughebungsklage)를 제기할 수 있다. 法院은 判定의 내용사실에 관한 審査는 할 수 없고 다만 仲裁判定의 형식적 유효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된다. 특이한 것은 東歐國家들의 仲裁에서는 仲裁判定文을 法院에 제출하거나 보관하는 규정은 없다.²⁹⁾

仲裁判定은 當事者간에는 法院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ZPO 제1040조)을 갖기 때문에 패소한 當事者는 그에 따라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만약 敗訴한 當事者가 스스로 仲裁判定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管轄法院에 強制執行申請을 하여 執行判決을 받아야 한다.(ZPO 제1046조).

國內仲裁이거나 外國仲裁이거나 원칙적으로 仲裁判定 그 자체는 執行力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法院의 執行判定을 받아 비로소 執行力이 생긴다(제1944조).³⁰⁾ 西獨은 물론 舊東獨도 1958년 外國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에 관한 뉴욕협약과 1961년 國際商事仲裁에 관한 구주협약의 당사국들이다.

우리나라 仲裁法이나 民事訴訟法에는 外國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國際條約이 없는 한 조리에 의할 수 밖에 없으나 獨逸法은 外國仲裁判定의 執行許容에 관하여 民事訴訟法 제1044조에 內國判定과 같은 執行절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경우 外國仲裁判定이 당해 外國法에 의하여 유효한 判定이 아닐 때에는 執行宣告를 할 수 없으며 또한 外國仲裁判定이 獨逸의

26) Buhler/Waitz, IPRax 1990. S. 62.64 ; BGH. BB 1972 S. 1295

27) Locher, BB 1988. 78f.; Basedow, aaO. S.3 ; Sandrock, JZ 1986, 37ff.

28) BGH NZW 1986, 1436 = RIW 1985, 970.

29) Stobach, Schiedsgericht. WR 1991/5. S. 152

30) Glossner, aaO. S. 175f. ; 崔公雄, 民事訴訟 1988, 413面

公序(ordre public)에 반하거나 절차의 보장 등 仲裁判定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執行판결을 할 수 없다. 獨逸仲裁判定은 獨逸法院에 의해 取消(Aufhebung)될 수 있다.³¹⁾ 外國仲裁判定은 獨逸法院에 의해 취소할 수 없고 다만 獨逸에서의 仲裁判定에 대한 執行宣告만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뉴욕협약에는 우리나라, 獨逸, 美國, 中國, 러시아를 비롯한 98개국에 1994년 5월 1일 가입하고 있다.

V. 南北韓의 商事仲裁制度

1. 南北韓의 仲裁制度의 現況

가. 우리나라에 仲裁制度가 도입된 것은 1912년 조선민사령 제1조 13호에 의하여 당시 日本民事訴訟法이 사용되면서 부터이다. 해방후에도 義勇民事訴訟法 제8편에 仲裁節次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仲裁制度 등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 1960년 현행 民事訴訟法을 제정하면서 仲裁節次篇을 삭제하였다가 1962년 經濟開發 5개년 계획으로 대외 貿易量의 증가와 함께 이에 따른 신속한 紛爭解決의 필요성에서 1966년에 삭제하였던 仲裁節次가 다시 제정(1966년 3월 16일 법률 제1767호)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원래 獨逸 民事訴訟法 제10편을 日本法에 받아들여진 것이었으나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改正없이 운용하여 國際仲裁에 관하여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商事仲裁制度는 美國과 獨逸의 制度를 모델로 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에 착실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仲裁法の 制定과 함께 大韓商工會議所는 商事仲裁業務를 관장할 기관으로 1966년 3월 商事仲裁委員會를 설치하였다. 大韓商工會議所는 1966년 10월 大法院의 승인을 받아 大韓商工會議所 商事仲裁規則을 제정하였다. 商事仲裁委員會는 1970년 2월 12일 임시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체되고 동년 3월 16일에 大韓商事仲裁協會가 商工部로부터 社團法人으로 허가되어 仲裁專門機關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 9월 1일자로 大韓商事仲裁協會의 명칭을 변경하여 社團法人 大韓商事仲裁院(The Korean

31)Glossner, u.a aaO S.168(Rn491)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으로 그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명실공히 國際的인 常設仲裁機關으로써 확고한 기반은 다지면서 세계化에 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7년 에 「韓美 友好通常 및 航海條約을 締結하고 1973년 5월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³²⁾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써 한국에서 내려진 商事仲裁判定이 이 條約의 締約國에서는 承認 및 執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나. 北韓은 해방이후 지난 40여년간 社會主義 經濟建設이란 정책기조 위에 철저한 중앙계획경제 및 통제 體制를 유지해 오면서 國家建設의 목표로 삼아 왔다. 對外貿易은 이른바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고, 빈약한 자원과 국내시장에도 불구하고 內需爲主의 개발정책을 추구해 왔다. 北韓은 共產主義 獨裁體制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내적으로는 主體思想을 강조해 다른 세계와의 교류는 등한히 하여 최근까지도 낮은 기술수준, 외화부족사태 등과 함께 消費財 및 輕工業 製品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北韓의 對外貿易政策의 제1차적 대상을 社會主義 국가들 간의 상호호혜의 원칙을 두고 그들과 상호협력·원조관계를 바탕으로하여 공산권역내의 구소련·中國을 비롯한 舊東獨³³⁾·폴란드·헝가리 등의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맺고 긴밀한 통상관계를 가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東獨과는 달리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의 성격을 띤 COMECON에는 정식 가입국이 아니었다.³⁴⁾ 뿐만 아니라 北韓은 社會主義 국가들 간의 상호經濟協리기구인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st Assistance)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면서도 會員國이 되기를 거부해 왔다. 이는 北韓의 非同盟 國家原則의 입장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仲裁에 관한 뉴욕협약이나 모스크바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2. 北韓의 仲裁制度和 仲裁節次

北韓은 1992년 11월 對外經濟기구를 개편하여 對外經濟委員會의 위상을 강화한

32) 鄭蕙人, 商事仲裁論, 貿易經營社 1988. 32面 이하 참조

33) Vgl. Strohbach, Handbuh, S. 64

34) 國土統--院, 國際商去來에 있어서 共產主義國家 및 北韓商去來의 特徵, 1977, 72面 ; 황의각, 北韓經濟論, 1992, 221面 이하 참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貿易部 및 對外經濟事業部를 對外經濟委員會 (Committee of External Economic Affairs)에 통폐합하여 同 委員會가 對外經濟關係를 총괄하고 있다. 對外經濟委員會의 아래에는 무역관계의 창구역할을 맡고 있는 朝鮮國際貿易促進委員會(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KOMT라 약함)와 國際經濟協力 및 나진·선봉 自由經濟貿易地帶 개발계획의 추진창구인 對外 經濟協力推進委員會(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CPEEC라 함)가 있다.

國際貿易關係의 촉진과 교류, 조정 등 通商關係는 朝鮮國際貿易促進委員會의 중요 임무이다. 對外經濟委員會내에 신설된 法規局은 南北韓 法制를 비교 연구하고 개발에 필요한 法規와 제도의 정비를 담당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다.³⁵⁾ 특히 비공산권인 일본·프랑스·西獨³⁶⁾ 등 西方 先進諸國과는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國際貿易促進委員會를 창구로 하여 民間次元의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지난 9월에는 노동당 소속이었던 高麗民族産業發展協會(고민발)를 政務院 산하로 옮기면서 對外經濟 統合窓口라고 발표되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³⁷⁾

北韓은 契約書상에 나타나는 각종의 商事紛爭을 仲裁할 목적으로 國際貿易促進委員會안에 仲裁委員會를 두고 있다. 이러한 仲裁機構는 社會主義 국가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조직형태로서³⁸⁾ 舊 蘇聯이나 舊 東獨의 경우와도 같은 것인데, 商工會議所에 구성된 仲裁裁判所(Arbitration Court at the U.S.S.R.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國家機構라기 보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社會主義적 기구이며, 仲裁判定部の 구성은 大學教授나 法律 및 經濟專門家 들로 구성된다. 仲裁裁判所는 專門성과 公正性면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³⁹⁾ 蘇聯의 몰락후에 獨逸國家聯合體 CIS (=GUS, Gemeinschaft unahangiger Staaten)의 국가들간

35)연합통신, 1993년 5월 17일 참조

36) 한독상공회, Nordkorea, Einblicke in Wirtschaft und Lebensweise, 1991. 72-75면에 의하면 1987년 북한은 서독으로 92.11(백만\$), 동독으로 23.94(백만\$)수출하고, 반면에 서독으로부터 수입은 136.21(백만 \$), 동독으로 부터 32.27(백만\$)수입하였다. 서독은 일본 다음의 무역대상국이였다.

37) 중앙일보, 1994년 11월 12일, 24면 참조

38) 법무부, 소련법연구(1), 308면이하: 구 동독의 경우는 Strohbach, Handbuch der internationalen Handelsschiedsgerichtsbarkeit, Staatavwewlag 1990, S. 67ff

39) 法務部 上揭書 310面

에 1992년 3월 20일 Kiew에서 체결한 貿易仲裁協定(키예프 협정이라 함)은 舊體制하에서와 비교하여 國際貿易紛爭중에는 거의 변함이 없음을 재인식 할 수 있다.⁴⁰⁾ 北韓의 外國人 投資紛爭의 해결에 있어서는 當事者간의 협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에 의하여 紛爭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심의·해결하며 제3국의 仲裁機關에서도 紛爭을 해결할 수 있다고 修正하고 있다.(제22조). 이것이 불가능하면 民事訴訟이나 仲裁節次에 따라 해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는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과 동일한 것으로 北韓에서도 貿易仲裁(商事仲裁)를 통하여 紛爭을 해결하고 있다.

仲裁의 개념상 주의할 점은 社會主義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仲裁은 國際貿易仲裁를 말하고 이는 國內仲裁⁴¹⁾와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國家仲裁와 民事裁判은 經濟的인 紛爭 등에 대하여 當事者들의 변론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國家權力的 活動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仲裁當事者和 關係人들은 구체적으로 사건해결을 위한 仲裁法院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결국 北韓에서의 國家仲裁는 국가에서 임명한 裁決院(仲裁人)에 의해 紛爭을 해결함으로써 國家에 의한 監督이 강화되는데 그 制度的인 특색이 있다고 본다.⁴²⁾

3. 北韓의 仲裁法制

北韓은 최근 들어 각종의 外國人 투자를 위한 法令을 制定하면서 紛爭의 해결방법으로 民事訴訟 또는 仲裁을 규정하고 있으나 中國이나 러시아에 있어서와 같이 어떤 仲裁法이 있는지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한 現行法을 파악

40) Vgl. Brendel, Neues Prozeßrecht für die russischen Gerichte der Staatlichen Arbitrage, WiRO 1992, S. 102

41) 김정금/리황, 중재법,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5, 5면 : 대한상사중재원, 중국(국제 분쟁해결가이드 1) 1993, 13면 : 법무부, 소련법연구(1), 법무자료 제129집, 1990 273면 이하 : 최종고, 북한법, 257면 참조

42) 北韓의 裁判所構成法 제25조는 "裁判所는 仲裁活動을 통하여 人民經濟計劃 및 契約規律違反에 대한 法的統制를 강화하며 社會主義 經濟建設을 적극 추동한다"고하여 국가중재의 실질이 국내경제재판임을 알 수 있다. 北韓研究所, 北韓의 裁判制度, 67, 166면 : 김진금/리황, 상계서, 11-13면 참조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⁴³⁾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들은 仲裁節次에 의해 國際貿易 紛爭사건 뿐만 아니라 國內經濟事件도 해결하고 있음은 舊 東獨의 경우나 中國의 경에서도 잘 이해가 된다. 실무적인 고려에서 仲裁에는 上訴制度가 없고 紛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과 法官에 의한 民事裁判보다는 國際契約關係의 紛爭사건을 자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北韓의 貿易仲裁委員會(Internationales Schiedsgerichtskomitee)⁴⁴⁾의 仲裁가 보다 유리하고 공정하리라 본다.

아래에서는 日本의 國會圖書館에서 입수한 北韓法令을 근거로 하여 北韓의 貿易仲裁에 관한 「조선國際貿易촉진委員會 소속 仲裁委員會에 있어서의 事件處理規程(1956년 11월 24일 시행)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영문으로만 알려져 그 정확성을 가릴수 없으나 Rules of Hearing(仲裁事件審議 規則,⁴⁵⁾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對外貿易促進委員會規程 89-002호, 1989년 1월 4일 채택)을 비교하여 본다.

이 審議規則은 大韓商事仲裁院에서 입수한 자료이나 한글 原文을 국내외에서 찾을 수 없어 정확한 法規用語 사용에 문제가 있다. 특히 北韓의 「仲裁事件審議規則」을 仲裁審問규칙으로 표현사용하고 있으나 改正合營法施行規則(1992년 10월 16일 政務院 결정 제148호)⁴⁶⁾ 제101조에서 仲裁는 北韓의 「仲裁事件審議結果에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本考에서는 仲裁事件審議規則이라 한다.

4. 北韓에서의 仲裁審理節次(事件處理規程/審議規則)

가. 仲裁委員會에서 判定하는 범위는 ① 外國과의 商品賣買契約·委託販賣契約·委託契約에서 생기는 賠償請求에 관한 紛爭, ② 위의 계약에 의한 商品의 輸送, 保險, 保管, 기타 업무에 관련된 紛爭 등이다.(仲裁委員會규정 제2조, 事件處理規程 제2조)

仲裁委員會는 貿易·國際法·經濟技術分野에 專門的인 知識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國際貿易促進委員會가 1년 임기로 임명하는 11인 이상 15인으로 구성하고, 構成員 가운데서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선출한다.(仲裁委員會규정 제3조). 仲裁委員會 委員長

43) Vgl. Pfaff, aaO. S.327 ;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 213面

44) 한독상공회, Nordkorea, S. 95참조

45)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입수된 영문자료 원문은 최종고입, 북한법, 262면 이하 참조

46)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자료93-35) 222면 이하 참조

은 委員會業務에 관하여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며 國際貿易促進委員會에 發言權을 갖고 참가할 수 있다. (仲裁委員會규정 제3조). 仲裁委員會는 國際貿易促進委員會 常務委員會 委員長의 추천을 받은 1-2명의 常任書記를 두고 이들은 仲裁委員會에 제기된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事件審理에 관한 준비업무를 행하며, 紛爭事件을 仲裁協議會에 보고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仲裁委員會 규정 제6조), 社務處理規程 제38조).

나. 仲裁委員會에 있어서 事件審理에 의한 해결절차는 國際貿易促進委員會 常務委員會가 제정한 「仲裁委員會에 있어서 事件審理規程」에 의하여 (仲裁委員會規程 제7조) 事件審理는 2명의 仲裁人(裁決員)과 1명의 議長仲裁人(裁決員)으로 구성되는 仲裁判定部(協議會)에서 행한다.(事件處理規程 제21조)

仲裁委員會는 쌍방간의 書面合意 조건하에 이해관계가 있는 측의 書面申請에 의해서 事件의 審理를 수리한다.(事件處理規程 제3조/審議規程 제2조).

다. 仲裁人의 選任, 仲裁申請書를 受理한 仲裁委員會는 지체없이 仲裁申請 관계서류 寫本을 동봉하여 仲裁受理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동법 제10조). 전조의 통지를 수리한 被申請人은 1월내(審議規則 제17조)에 신청에 대한 抗辯根據가 되는 일체의 증거서류를 첨부한 答辯書를 仲裁委員會에 제출하는 동시에 仲裁人 1명을 지명하거나 지명을 委員長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안된다.(동 제11조)

기간내에 仲裁人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 仲裁委員會 委員長이 委員會 위원중에서 지정한다(審議規則 제26조 참조). 仲裁委員會委員長은 지명된 仲裁人에게 즉시 통지하고 통지수리후 15일 이내에 責任仲裁人을 指名을 지시하고, 기한안에 責任仲裁人 選拔에 관해 仲裁人間에 合意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동 委員長이 成員 가운데서 指名한다(동 제14조).

지명된 仲裁人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事件審理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仲裁委員會 委員長은 이를 當事者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同 委員會 成員 가운데서 다시 仲裁人 지명을 요구하고 그렇게 안될 경우 직접 지명한다.*중 제15조), 16조: 審理규칙 제25조는 .. 정한 기한내에 ...). 申請人의 요구가 있으면 仲裁委員會 委員長은 仲裁申請의 擔保에 관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라. 審理의 方法 事件審理日은 責任仲裁人들이 合意한 바에 따라 仲裁委員會 委員長이 결정하여 當事者에게 통지한다(동 제19조). 審議規則 제30조는 議長仲裁人

이 정한다고 하였다. 事件審理는 원칙적으로 公開會議이나 當事者의 요구가 있으면 仲裁委員會결정에 따라 非公開로 할 수 있다. (동 제22조: 審議規則 제32조)

被申請人は 反對申請(反訴)을 할 수 있는데, 本申請과 反對申請은 共同審理든 獨立分離審理든 仲裁協議會가 결정한다.(동 제23조: 審議規程 제38조). 仲裁審問에는 쌍방은 當事者 또는 信任狀을 지참한 代理人(外國人 포함)을 事件審理에 참가시킬 수 있다. (동 제24조 ; 審議規則 제34조).

證明에 대한 檢査方法과 評價는 仲裁協議會 재량에 속하며 專門家에게 鑑定을 위탁할 수 있다. 仲裁會議의 결정은 多數決로 하며, 判定文에는 責任仲裁人과 仲裁人이 署名해야 한다. (동 제29조: 審議規則 제41조).

仲裁協議會의 判定宣告는 事件審理가 終了된 후 회의에서 행해지는데, 仲裁協議會에서 宣告한 判定은 최종적이다.(審議規則 제45조). 仲裁費用은 敗訴側이 부담한다.(동 제33조); 審議規則 제55조 1항).

仲裁協議會에서 審理중인 紛爭이 쌍방의 合意에⁴⁷⁾ 의해 해결되면 仲裁協議會는 審理를 중지하고 "적절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審議規則 제48조).

마. 北韓의 仲裁法에는 仲裁判定에 대한 承認 및 執行에 관한 규정이 없고 北韓이 뉴욕 협약과 같은 國際條約에도 가입한 바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제3국에서 내려진 仲裁判定에 대한 執行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⁴⁸⁾ 中國과 러시아는 유엔의 뉴욕협약에 가입국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南北韓間 仲裁에 관한 協約에는 이에 관한 실질적인 협력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I. 맺음말

南北韓間 經濟協力の 기본목적은 相互交流를 통해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하고 나아

47) Bgl. Pfaff, aaO/ S. 326에서는 이 합의는 중재화해(Vergleich)를 의미한다고 하고 다만 어떤 형식의 합의인지에 관하여 더 자세한 규칙은 없다고 한다.

48) 홍천용, 북한의 경제관련법상의 계약제도, 경남법학(제9집), 1994, 255면 : 법제처, 북한합영법 214면; 매일경제신문 1994년 7월 20일 참조

가서는 平和統一의 기반을 이루려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北美會談 妥結이 가져다주는 南北韓 交流協力 확대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會談妥結 이후 韓半島의 繁榮과 平和의 관건이 될 것이며 손익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韓半島의 經濟的 統合과 統一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므로써 民族의 繁榮과 平和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상호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協力이 추구되어야 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信賴關係를 형성하며 장기적으로 南北間에 統合된 經濟秩序를 창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껏 敵對關係를 전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

政府는 이를 위한 기본적인 去來秩序를 制度的으로 확립하거나 측면에서 對北交易을 위한 環境改善에 노력하는 것이 바로 北韓의 制度改善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信賴關係를 구축하는 일이 될 것이다. 비록 현실적 여건이 南北韓間에 새로이 형성된 不信과 긴장관계를 떼어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젠가는 정상화되어 다시 가동될 「南北經濟交流協力 共同委員會」에서는 南北經協에 따른 紛爭解決에 대한 制度的 法的裝置가 마련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히 北韓의 民事裁判節次와 商事仲裁制度에 관하여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東西關係가 보여주는 經協 등을 韓國의 상황에 맞게 고려하면서, 南北韓間의 經濟協力에서 발생하게 되는 紛爭을 商事仲裁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은 平和的인 統一으로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앞으로 검토될 南北韓間의 貿易去來에서 발생할 紛爭解決制度는 國際的인 慣行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되도록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의 制度的 裝置를 존중해 주고 대화로서 공통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제도의 優秀性만이 아니라 體制가 다른 北韓의 法文化 속에서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肯定的인 要素들은 찾아내어 우리와의 同質性을 보여주고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⁴⁹⁾ 東西獨이 統一을 이루고 난 후에도 舊東獨制度에서 肯定的인 要素들을 찾아내고 法改正에 반영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현실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9) 최종고, 북한의 입법동향과 법생활, 북한연구(통권 제7호), 1993, 32면 참조